

## 2014년도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

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「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(훈령 제28호)」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14년 03월 11일  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진호

### I. 공모대상 과제 현황

분야	과제 수				연구개발비 (백만원)	
	총계	단년도	다년도 계속			
			(1/2)	(1/3)		
식품 등 안전관리	12	10	1	1	1,430	
의약품 등 안전관리	27	23	2	2	1,736	
의료기기 등 안전관리	6	5	1		952	
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	2	1	1		250	
안전기술 선진화	1	1			50	
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	4	3	1		320	
계	52	43	6	3	4,738	

-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(RFP)는 [붙임1, 2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II. 신청안내

### 1. 신청자격

#### 가.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

- 1) 국 · 공립연구기관
- 2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공공기관
-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4)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,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
- 5)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6)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
#### 나.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

- 1) 단체장, 연구기관의 장
- 2)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
- 3)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
- 4)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
- 5) 그 밖에 위 1)부터 4)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
- 6)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
- 7)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

#### 다. 신청 과제수 제한

※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(세부연구과제 포함)를 신청할 수 없음

라. 관련 규정 :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」(훈령 제28호) 제16조

## 2. 신청절차

-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-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 · 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,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연구관리시스템 등록

- 1) 식약처 **연구관리시스템(<http://rnd.mfds.go.kr>)**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· 등록 후 접수증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(평가용 및 제출용)를 출력

※ 주의사항

- ① Windows가 설치된 PC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타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)
- ② Windows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(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)  
: [도구 → 인터넷 옵션 → 보안 → 사용자 지정수준 → ActiveX컨트롤 및 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]을 확인으로 변경

### 나. 서류제출

- 1) 접수마감 : **2014년 04월 09일 16:00시까지**
- 2)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
- 3) 제출서류
  - 가) 접수증
  - 나)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
  - 다)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
    - 제출용 2부(원본 1부 포함)
    - 평가용 7부
  - 라) 발표용 PPT 출력물 7부 및 PPT 파일(발표평가에 한하며, CD 혹은 USB 저장 제출)

- ※ 제출서류 중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(평가용, 제출용)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말합니다(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).
  - ※ 과제별 평가방법은 [붙임 1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추가로 발표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※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(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확정 공지).
  - ※ 연구관리시스템(<http://rnd.mfds.go.kr>)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,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4) 접수처 :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(424호), [첨부]의 약도 참조  
- 문의전화 : 043-719-4168~9 (Fax : 043-719-4150)

### 3. 선정방법

- 가.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실시합니다.
- 나.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, 연구수행 타당성,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.
- 다.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최종접수 결과 서면평가 대상과제가 단일응모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선정결과의 통보

- 가.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,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(<http://rnd.mfds.go.kr>)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

## 5. 향후 추진일정

가. 선정평가(서면 및 발표평가) : 2014년 04월 24일(목) ~ 30일(수) (예정)

※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과제 경쟁률이 4:1 이상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(2014년 4월 예정)

실시 후 상위 3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 실시

나. 선정평가(현장평가) : 2014년 05월 중 예정

※ 현장평가는 대형과제(연구개발비 3억 이상)의 경우 발표평가 후 필요시 실시

다. 선정결과통보 : 2014년 05월 01일(목) (예정)

라. 계약체결 : 2014년 05월 15일(목) (예정)

## 6. 참고사항

가.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」(훈령 제28호)에 준하여 추진합니다.

나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
다.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**부가가치세**는 연구비에 포함

라.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,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**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(IRB)**를 통해 **심의**를 받고 그 결과(심의결과서)를 제출하여야 함

## 7. 첨부파일

[붙임 1]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과제목록

[붙임 2] 연구과제제안서(RFP)

[붙임 3]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

[붙임 4] 「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8호)

[붙임 5]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」

[붙임 6]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

[붙임 7]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」

[붙임 8]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」

[붙임 9]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편집방법

[붙임 10]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

[붙임 11]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(발표용) 양식

[별첨 1]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기준(2013)

#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## 1.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

가.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표지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나. 연구과제제안서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다.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내용

- 총괄요약문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- 총괄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- 총괄연구개발의 필요성

- 총괄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

-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·방법 및 추진체계

- 총괄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

-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- 총괄참여연구원 편성표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- 총괄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라. 제( )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(세부과제가 있는 과제에 한하여 작성함)

- 세부요약문

- 세부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- 세부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

-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·방법 및 추진체계

-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(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)

※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필히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연구과제제안서(RFP)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(RFP 수정불가).

※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은 연구관리시스템에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사항이 출력되는 부분으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계획서 작성 시 시스템 출력부분의 내용은 임의 편집 불가합니다.

## 2.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

### 가. 제출용 : 2부(원본 1부 포함)

- “가” ~ “라” 항목까지 차례로 구성하여 제출

※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표지 :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

### 나. 평가용 : 7부

- “가 ~ 라” 항목을 구성하여 제출

※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(접수번호 기입)을 첫 번째 장으로 구성

-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 시 옹모기관 및 옹모연구책임자를 기재하는 페이지가 음영으로 표기된 시스템출력물을 사용하고, 내용 중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 하여서는 아니 됨.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접수가 불가할 수 있고,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-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‘제출용’과 ‘평가용’ 부분에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내용의 한글파일을 붙여넣기 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목차 순으로 구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각각 업로드하고 이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(‘시스템출력’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)

※ 공모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 (<http://rnd.mfds.go.kr>)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관리시스템(인터넷)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용역연구개발비는 [붙임 6]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접수처 약도

